

「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(재수립)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」
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,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, 「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(행정안전부 제2024-44호)」 제5조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「양평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(재수립)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」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에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6일
양평군 재무관

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가. 용역개요

용역명	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(재수립)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
용역기간	착수일로부터 36개월(1차분: 착수일로부터 4개월)
용역내용	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식 ※ 과업이행요청서 참조
용역금액	금4,974,695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나. 입찰 예정시기 :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

※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다. 장기계속계약이며, 1차분 사업비는 264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라. 시행기관 : 양평군

마. 가격입찰 예정시기 :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

2. 참가자격

가.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.

- 1)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(종합)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·일반)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-설계등용역)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
- 2)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장관에 건설부문(수자원개발, 토질·지질, 구조, 도시계획) 및 환경부문(수질관리)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「기술사법령」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
- 3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)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
- 4) 측량 분야는 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『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‘직접생산확인증명서【제품명:측량, 세부품명:측량용역(8115160401)】’를 소지한 업체

3.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

가.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,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.

[과업분담비율]

구분	합계	엔지니어링	측량
공종별 구성비율	100.00%	82.4%	17.6%

※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- 예시1 : A, B, C, D,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
 - 공동이행 : A + B + C, 분담이행 : D, E ⇒ 참여 가능
- 예시2 : A, B, C,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
 - 공동이행 : A + B + C, 분담이행 : A, D ⇒ 참여 불가능

※ 「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9조 규정에 의거 **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% 이상을 권장합니다.**

※ 지역업체 참여도(적격심사)는 측량분야 비율을 포함하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측량분야는 제외합니다.

나.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**최소 지분율은 5%이상**으로 하며,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**5개사 이내**로 참여 가능합니다.

다.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**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**이어야 하며,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**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라.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.

4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

가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, 작성요령, 과업내용서 게시

-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, 작성요령,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(<http://www.g2b.go.kr>)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장소

- 1) 제출기한 : **2026. 9. 30.(수) 10:00 ~ 17:00까지(12:00~13:00 점심시간 제외)**
- 2) 제출장소 : 양평군 건설과 하천시설팀[경기도 양평군 군청앞길 2, 본관 5층(031-770-2427)]
- 3) 제출서류(양면좌절)

-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.
-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(원본 1부, 사본 1부) /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
-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(합본 2부, 별권 6부(업체명 기재 1부, 업체명 미기재 5부))

※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USB* 1개 제출

* 사업수행능력평가서(기술인, 회사실적 등 포함), 업무중복도(hwp 파일) 포함

4) 제출양식 :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

※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시 갑지를 제외한 평가서 내용에 회사명 표기시 최하점 처리함

다. 제출방법 : **직접방문** 제출[우편, 팩스, 전자우편(e-mail), 퀵서비스 등 **접수 불가**

※ 제출시간 초과 시 일체의 자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.

라.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

-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, 사용인감계(인감지참), (법인)인감증명서,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, 업체 면허 사본 각 1부(공동 도급업체 포함)

※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

5. PQ평가,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

가. PQ평가 기준 및 방법

- 1) 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『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』을 적용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.

(※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(1점)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의하는 전차용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, 해당 항목은 0점 일괄 부여함)

- 2)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**평가결과 87.50점 이상**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,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.
- 3) 가격입찰은 상기 심사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, 입찰일시, 장소를 개별통보 합니다.

나.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

- 1) 최종 낙찰자 결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(별표1) **1.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.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**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**(79.995%)**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중 **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**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
2) 적격심사 세부기준

-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며 적격심사시 평가합니다.
 - 30%이상 : 3점 · 30%미만 20%이상 : 1점 · 단독 또는 20%미만 : 0점
- *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
-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**배점한도(만점)를 모두 부여함.**
-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1> 2. 가.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**“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”**는 적용하지 않으며, **배점 한도(1점)을 모두 부여합니다**
-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,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.
- 기술인력평가(△10)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질서준수(△1)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.

[별표 1] 1.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.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

적격심사(종합평점)(100점) = 해당용역 수행능력(PQ)(64점) +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(1점) + 지역업체참여도(3점) + 경영상태(2점) + 입찰가격(30점) + 기술인력보유상황(△10점) + 계약질서준수(△1점)

- 다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“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”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
- 라.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6. 기타사항

- 가.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나.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,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,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,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라.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자격이 상실되고, 입찰참가 제한, 낙찰취소,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마.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(충점)하고,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. 단, PQ평가항목 중 “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”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바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.
- 사. 투입예정기술인(참여기술인)의 해당분야 자격, 경력,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,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 - *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(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, 평가자 등급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)
- 아.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자.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광고조건,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,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, 기술용역 입찰요의서, 기술용역 일반조건, 용역계약 특수조건,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(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)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차.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,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카.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.

타.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류 제출 3일전 17:00 까지 FAX(031-770-2811)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(도착)하여야 하며 전화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.(접수여부 전화 확인)

파.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-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관련 : 양평군 건설과 하천시설팀 (031-770-2157)
- 입찰 및 계약 관련 : 양평군 회계과 계약팀 (031-770-2172)

(붙임1)

서 면 질 의 서

☐ 질의자

회사명 :

대표자 :

(인)

담당자 :

전화번호 :

F A X :

E-Mail 주소 :

항 목 (p.00)	질의내용
2026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	